

대구예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 (제정 2012.04.13. 교무위원회)
- (개정 2013.01.14. 교무위원회)
-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 (개정 2020.03.09. 교무위원회/자구수정)
- (개정 2022.08.01. 교무위원회)
- (개정 2022.08.29. 교무위원회)
- (개정 2024.08.19. 교무위원회)
- (개정 2024.12.02. 교무위원회)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4장의 “외국인 학생”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재외교포 포함) 유학생과 학술교류협정 및 협약에 의한 교류(교환)학생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유학생 선발 및 학사관리를 철저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라 함은 학부생, 교류(교환)학생, 위탁생과 어학연수생 등의 모든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입학시기) 유학생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시기는 학칙에 의거 매학기 3월과 9월을 기준으로 하고, 입학 허가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유학생의 학부(신·편입) 입학자격은 다음에 의한다.

- ① 학부의 신편입학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1학년 : 고등학교졸업(졸업예정)이상의 학력 소유자 또는 자국에서 12년 이상 학력과 정 이수자. 기타 법령에 의한 대학입학능력이 인정된 자.
 - 2. 3학년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 3. 학업계획서와 면접을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 재정능력이 있는 자.
- ② 교류(교환)유학생에 관한 사항은 사안별 교류협약(협정)에 의한다.

제7조(언어능력 기준) 유학생의 학부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 언어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예체능 계열은 2급 이상) 단, 졸업 이전까지 반드시 4급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예체능 계열은 3급 이상)
- ②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 이상으로 한다.
- ③ 제반 법령에 의한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탁생, 교환(교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입학생 등은 한국어능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조건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2.08.01.)

제8조(입학 구비서류) 유학생의 입학시 갖추어야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소정의 입학지원서 1부.
- ②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의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1부.

- ④ 추천서(출신고교 및 대학의 장) 1부.
- ⑤ 재정능력입증서류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록금과 생활비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 은행잔고증명, 1개월 이상 계속예치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중 1가지. 1부.
 - 2. 재정보증인의 재직 및 수입증명서. 1부.
- ⑥ 친족관계 증명서(호구부 등) 1부.
- ⑦ 본인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원본대조) 각 1부.
- ⑧ 여권사본(원본대조) 1부.
- ⑨ 기타 사실 확인에 필요하여 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 1부.

제9조(구비서류 제출) 유학생의 학부 입학자는 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제교류원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원에서는 이를 확인 및 검증한다.(개정 2020.03.09.)

(개정 2024.08.19.)

제10조(사정방법) 유학생의 입학사정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11조(입학절차) 유학생의 입학 절차는 제10조의 사정에 통과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법무부의 사증을 취득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입학이 완료된다.

제12조(등록금) 유학생은 소정의 절차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교류(교환)학생은 해당 협약(협정)에 의해 등록금을 납부한다.

제13조(학사관리) 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학칙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며, 유학생 교육 및 학적관리는 교무처에서, 교류(교환)학생은 국제교류원에서 관리하고, 교육은 소속 학부(전공)에서 한다.(개정 2020.03.09.)(개정 2022.08.01.)

(개정 2024.08.19.)

제14조(학사관리 점검 및 조사)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매학기가 종료되면 교무처에서 직전학기의 유학생에 대한 출석 및 학점부여에 관해 자체 점검 및 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국제교류원에도 통보한다.(개정 2020.03.09.)(개정 2024.08.19.)

제15조(수업연한과 교과) ① 유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하고, 교류(교환)학생의 경우 1년 이내로 하고 특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협약에 의한 유학생의 경우 3년 8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업관리) 유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을 관리한다.

- ① 학사일정 등을 숙지(홍보)하여 출석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 ② 수강신청은 학부(전공)에서 지도한다.(개정 2022.08.01.)
- ③ 출석 및 수업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전체 평정의 중요성을 인식 시킨다.
- ④ 성적의 결격과목(F)이 없도록 지도한다.
- ⑤ 철저한 수업과 학점관리로 최대한 장학금을 수혜 하도록 지도한다.
- ⑥ 수강신청 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도한다.
- ⑦ 졸업에 필요한 학점관리를 지도한다.
- ⑧ 전공 변경 등으로 인한 학점관리를 지도한다.
- ⑨ 필요할 경우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을 위해 한국어연수과정, TOPIK과정으로 개설하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개정 2024.12.02.)

⑩ 단순 동영상 강의 수업은 학년별 취득학점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초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02.)

제17조(성적이수 및 한국어 연수) ① 유학생의 성적은 수업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 또는 기타 사정을 통과 하였을 때에 성적을 부여하며, 성적증명서를 발급 한다.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예체능학과 유학생은 3급, 그 외 학과는 4급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졸업요건이 된다. (영어사용과정자 제외)(개정 2024.12.02.)

③ 한국어 연수과정 (예시: 실용한국어, 한국어의사소통, 한국문화의이해, 한국글쓰기, 한국어발표와토론 등) 은 12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된다.(영어사용과정자 제외)(개정 2024.12.02.)

제18조(장학관리) 유학생의 유학 장학금 지급은 장학규정에 의하며, 장학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한다.

① 수강신청은 장학금 수혜에 결격이 되지 않도록 매학기 15학점 이상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② 장학금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됨을 홍보하여 인식 시킨다.

③ 출석, 수업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타 사정을 통합 사정함을 지도한다.

④ 평소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평점에 따라 장학금 수혜 비율이 달라짐을 각인시켜 학업의 동기를 유발시킨다.

⑤ 철저한 수업과 학점관리로 최대한 장학금을 수혜 하도록 지도한다.

⑥ 장학금은 매 학기말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⑧ 삭제(개정 2024.08.19.)

제19조(입·출국 지원) 유학생들의 입·출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 예약과 국내의 이동차량예약 및 비자의 신청 및 연장을 일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제20조(일상생활 관리지원)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빠른 적응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관리 지원한다.

① 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입사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② 기숙사 이외의 주거공간을 원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③ 주변 생활편의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④ 생활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소속 전공에서 월 1회 이상 상담을 하고 국제교류원에서도 수시로 상담을 한다.(상담일지 작성) (개정 2020.03.09.)(개정 2024.08.19.)

⑤ 수업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⑥ 학부(전공)의 학업 및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2022.08.01.)

⑦ 일상생활 및 한국어능력 향상과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멘토링 제도를 알선한다.

⑧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 학생들과의 1:1 수업을 알선한다.

⑨ 주거지 및 휴대폰번호를 파악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한다.

제21조(문화활동) 유학생들의 한국문화의 이해와 산업발전에 현장감을 주기 위해 문화탐방, 우수 산업체 시찰, 체육대회, 유학생의 밤 행사 등을 최대한 많이 실시하도록 하고,

홈스테이를 최대한 알선한다.

제22조(취업지원 및 알선) 유학생들의 학부 생활동안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고 생활의 도움이 되도록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에는 물론 자국에 진출되어 있는 국내기업에 취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유학생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경력개발장학생 포함)를 할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 불법 취업을 방지한다.

제23조(보험가입) 유학생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한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또는 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개정 2022.08.29.)

제24조(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유학생의 전반적인 관리는 국제교류원이 전담하며,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다. 또한 유학생의 미등록 및 제적, 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개정 2020.03.09.)(개정 2024.08.19.)

제25조(관계법 적용) 유학생 관리 관계법규의 준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등 관련규정과 교류대학과 체결한 교류협력(협정)을 준용한다.
- ② 언어능력의 기준은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의해 2011년 9월부터 전면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4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호 (경과조치)

- ① 제7조(언어능력 기준)는 2011년 9월부터 적용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8조(장학관리)는 2012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 ③ 제20조(일상생활 관리지원),
- ④ 제23조(보험가입)는 재학중인 유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8.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제20조(일상생활 관리지원),
- ② 제23조(보험가입)는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재학 중인 유학생은 개정 전 규정에 준한다.

부 칙(개정 2024.0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12.0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